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0. 7. 21.

사회건설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2020년 7월 10일

나. 발 의 자: 김길자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0년 7월 13일

라. 상정일자: 제22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0. 7. 2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김길자 의원)

가. 제안이유

-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맞도록 제명과 조문을 개정하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실무사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실무사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
(안 제10조의2)
- 개정된 상위법령명과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임선영)

- 본 건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실무사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발의된 개정조례안임.
- 주요 개정 내용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실무사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그 밖에 개정된 상위법령명과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음.
- 본 조례안은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맞도록 제명과 조문을 개정하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사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규정되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7
----------	-----

발의년월일: 2020년 7월 일

발의자: 김길자 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이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이에 맞도록 제명과 조문을 개정하고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실무사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제명 변경
- 나.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실무사례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 다. 개정된 상위법령명과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입법예고(2020. 7. 10. ~ 7. 14.):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로, “아동·여성 보호”를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자를”을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피해자”란 아동·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2장의 제목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운영”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의 설치 운영”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아동·여성보호”를 “아동·여성안전”으로 한다.

제2장에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실무사례협의회 구성) ① 지역연대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연대에 실무사례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사례협의회 위원은 제6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담당자 및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사례협의회장은 지역연대 간사로 한다.

③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여성안전 관련 개별사례 협의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의 제목 “아동·여성보호 시책의 수립 및 추진”을 “아동·여성안전 시책의 수립 및 추진”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u>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u>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u>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u> <u>조례</u>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u>아동·여성 보호</u>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2. (생략) 〈<u>신설</u>〉 <u>제2장 아동·여성보호</u>	제1조 (목적)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 <u>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u>----- -----. 제2조 (정의) ----- -----. 1. ----- 사람을 -----. 2. (현행과 같음) 3. “<u>피해자</u>”란 <u>아동·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u> <u>제2장 아동·여성안전</u>

지역연대의 설치 운영

제5조 (지역연대의 설치) ①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신 설〉

제3장 아동·여성보호 시책의 수립 및 추진

지역연대의 설치 운영

제5조 (지역연대의 설치) ① ---

----- 아동·여성안전 -----

--.

제10조의2(실무사례협의회 구성) ① 지역연대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연대에 실무사례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사례협의회 위원은 제6조제3항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실무담당자 및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실무사례협의회장은 지역연대 간사로 한다.

③ 실무사례협의회는 지역 내 아동·여성안전 관련 개별사례협의 및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3장 아동·여성안전 시책의 수립 및 추진